

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「주민대표회의」 구성 공고

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[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21호(2026.01.08.)]됨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7조에 의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합니다. 주민대표회의 구성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6년 1월 27일

영 등 포 구 청 장

1. **주요역할:**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사업전반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제시
2. **구성인원:**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(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인 이상 3인 이하의 감사 포함)
3. **구성방법:**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서와 불임서류를 함께 제출
※ 구성하려는 자는 불임2의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구청에 연번 부여를 신청하여야 하고,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만 제출가능
4. **연번부여:** 영등포구청 본관 4층 재개발사업과에서 동의서 연번 부여
 - 연번 부여 신청 시 주민대표회의 위원 명단 및 운영규정(안) 제출 필요
 - 운영규정(안)은 불임의 운영 규정 참고(안)(불임3)을 참고할 것
 - ※ 운영규정(안) 검토 후 동의서 연번 부여 예정이며, 참고(안)을 그대로 인용할 시 검토 생략
5. **주민대표회의 구성 신청시 구비 서류:**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서류
 -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(불임1)
 -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(불임2)
 -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
 - ※ 운영규정은 불임의 운영 규정 참고(안)(불임3)을 참고할 것(구역여건에 따라 수정가능)
 - 주민대표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
 - 주민대표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제출하는 운영 규정에 따른 주민대표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
 - 토지등소유자의 명부

6. 검토계획:

- 과반수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동의서를 먼저 제출하는 추진주체를 우선적으로 검토 후 처리를 원칙으로 함.
- 단, 우선 제출한 추진주체의 서류검토 결과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미달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승인조건에 불충족할 경우, 보완요청 없이 차 순위 제출자를 검토 후 처리.

7. 제출처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관련 문의 : 영등포구청 재개발사업과(☎ 02-2670-3534)

붙임 1.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1부.

2.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 1부.

3.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 참고(안) 1부. 끝.